

2020 - 1048

「 () () 」
「 () 」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308호(1996.11.13.)로 최초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18호(2006.4.6.)로 재정비 한 후, 강북구 공고 제2020-382호(2020.4.2.), 제2020-744호(2020.07.02.)로 열람하였던 「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」 및 「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」에 대하여
2.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3. 본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(안)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9월 24일

강 북 구 청 장

가. 재열람사유: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재열람

나. 공 고 일 : 2020. 9. 24.(목)

다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20.10.8.까지(14일간)

라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(☎ 901-6844)

마.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(안)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없음)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	미아동 688-5번지일대	74,670	-	74,640	1996.11.13. (서고시제308호)	-

○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삼양 특별계획구역Ⅲ	미아동 703-149	10,914	-	10,914	서울시고시 제2006-118호 (2006.4.6.)

※ 기타 상세내용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또는 강북구청 홈페이지(고시공고) 게재와 같음.

바.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: 생략(열람도서와 같음)

사. 관계도면: 생략(열람장소 및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

아. 의견제출: 강북구 도시계획과 및 전자메일(mepi@gangbuk.go.kr)